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우리 면 소하천구역에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(소하천등의 점용 등)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‘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’ 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위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가. 공 고 명: ‘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’ 공시송달 공고

나. 공고기간: 2026. 7. 16.(목) ~ 8. 7.(금) (23일간)

다. 공고장소: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구미시청 홈페이지

라. 공고내용: 붙임 참조(위치도 및 현장사진)

마. 유의사항:

- 1). 공고내용의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「소하천정비법」에 따른 원상회복통보, 사법기관에 고발,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2)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‘송달의 효력’이 발생하며,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(10일)을 별도로 부여합니다.

바. 문 의 처: 무을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(☎ 054-480-7268)

2026년 7월 16일

무 을 면 장

**붙임**

**공시송달 공고 대상**

| 연번 | 소하천명 | 위치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 | 무수천  |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972-11 | 3개소 |
| 2  | 백자천  | 구미시 무을면 백자리 687-13 |     |

## 위 치 도 및 사 진 대 지

하천명 | 무수천



위 치 |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972-11



## 위 치 도 및 사 진 대 지

위 치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972-1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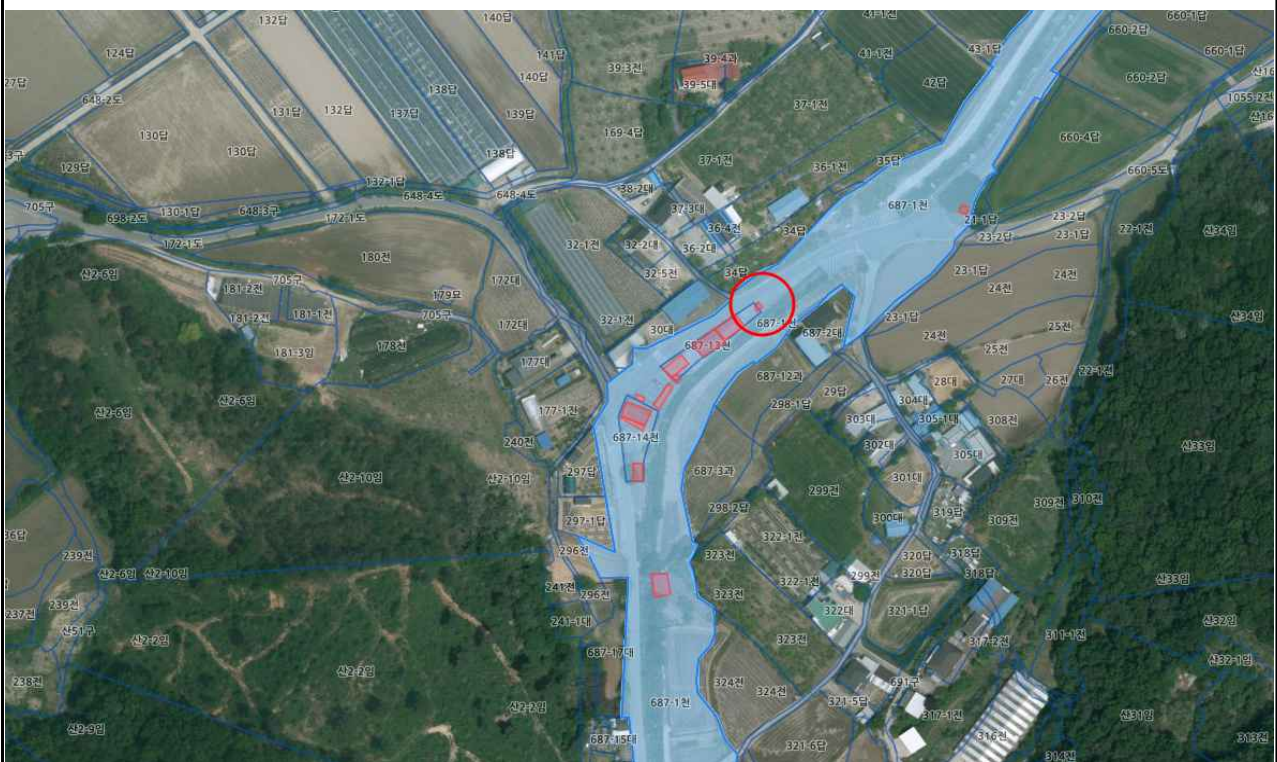
위 치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972-11





# 위 치 도 및 사 진 대 지

하천명 백자천



위 치 구미시 무을면 백자리 687-13

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|    |      |
|-------|----|------|
| 의견제출인 | 성명 |      |
|       | 주소 | 전화번호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의견제출<br>내용 |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|          |
|            | 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명칭)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전화번호: ) |
|            |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기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